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- 67호

『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1월 02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고용노동부의 디자인교육사업 확정에 따라 인천디자인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의 확대 및 세분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지원사업의 범위에 디자인 교육사업 추가(안 제4조)
-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(안 제4조의2)
- “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”를 “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”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기능을 추가함(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11. 11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2, 팩스 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별 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
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,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같은 항 제8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디자인 교육사업

제4조의2제1항 중 “제6호까지 및 제8호”를 “제5호까지 및 제9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“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6호 및 제9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7호,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실시하기

위하여 인천디자인교육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지원센터 및 서비스센터는”을 “지원센터,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는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디자인전문공자 또는 해당업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지원센터 및 서비스센터”를 “지원센터,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지원센터 및 서비스센터”를 “지원센터,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 “(발전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)”을 “(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문을”을 “자문 및 심의를”로, “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자문”을 “자문 및 심의”로 한다.

제12조 제목 “(협의회 구성 등)”을 “(위원회의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, 제2항 및 제5항 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.

제16조 제목 “(협의회 간사 등)”을 “(위원회 간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)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4.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5.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6.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7. 중소기업 및 산업시설의 서비스디자인 지원 <u><신 설></u> 8.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② (생 략)	제4조(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8. (현행 제4호와 같음) 4. (현행 제5호와 같음) 5. (현행 제6호와 같음) 6. (현행 제7호와 같음) 7. 디자인 교육사업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제4조의2(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(이하 “서	제4조의2(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----- 제5호까지 및 제9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제4조제1항제6호 및 제9호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비스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③ 지원센터 및 서비스센터는 제4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지원센터 및 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및 서비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제11조(발전협의회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<u>자문</u>을 받기 위하여	----- -----.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7호,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교육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④ 지원센터,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는 전문적인 사업운동을 위하여 디자인전공자 또는 해당업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, ----- ----- -----. ⑤ --- 지원센터,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----- ----- -----. ⑥ -----지원센터,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----- ----- -----. 제11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 -----자문 및 심의를-----

현행	개정안
<u>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</u> (이하“<u>협의회</u>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<u>협의회</u>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 1.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<u>자문</u> 2. ~ 3. (생략) 제12조 (<u>협의회</u> 구성 등) ① <u>협의회</u>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제13조 (<u>위원장</u> 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협의회</u>를 대표하고, <u>협의회</u>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15조 (<u>회의</u>) ① <u>협의회</u>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② <u>협의회</u>의 회의는 정기회의	-----<u>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</u>(이하 “<u>위원회</u>”라 한다)-----. ② <u>위원회</u>-----. 1.----- ----- <u>자문</u> 및 심의 2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2조 (<u>위원회</u> 구성 등) ① <u>위원회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3조 (<u>위원장</u>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위원회</u>-----, <u>위원회</u> -----. 제15조 (<u>회의</u>) ① <u>위원회</u>-----. ② <u>위원회</u>-----

현행	개정안
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③ ~ ④ (생략) ⑤ <u>협의회</u>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신설>	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.
제16조 (<u>협의회</u> 간사 등) ① <u>협의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 ② 간사는 <u>협의회</u>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,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. ③ 간사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. 1. <u>협의회</u> 운영에 관한 사무 2. (생략) 3. <u>협의회</u>의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4. 그 밖에 <u>협의회</u> 운영에 필요한 사항	제16조 (<u>위원회</u> 간사 등) ① <u>위원회</u>----- ----- ② ----- <u>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. 1. <u>위원회</u>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위원회</u>----- 4. 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
제17조 (<u>소위원회</u> 등) ① <u>협의회</u>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	제17조 (<u>소위원회</u> 등) ① <u>위원회</u>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	----- -----.
② 소위원회는 <u>협의회</u>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,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	② --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<u>협의회</u> 기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.
제18조 (수당 등) <u>협의회</u> 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8조 (수당 등)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☐ 지방자치법 ○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조례안 제4조의2(인천디자인센터 설치·운영 등)

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7호,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교육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교육센터 사업비 및 관리비, 임대비 발생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디자인교육센터 사업비(국비) : 10억원
- 디자인교육센터 관리비 및 임대비(시비) : 0.8억원

나. 추계 결과

- 디자인교육센터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컨소시엄 사업 선정에 따라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(매년 10억원)로 지급되며, 센터 관리비 및 임대비는 시비(0.8억원)로 확보, 매년 수행 가능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및 시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장 구영모

[붙임1]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계
세입	디자인교육 사업비 (국가직접지원)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	소 계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세출	디자인교육센터 관리비, 임대비	80	80	80	80	80	400
	디자인교육 사업비 (국가직접지원)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	소 계	1,080	1,080	1,080	1,080	1,080	5,400
재원 조달							
국 비 (국가직접지원)	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시비	소 계	80	80	80	80	80	400
	일반회계	80	80	80	80	80	40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군·구비		-	-	-	-	-	-
민 간		-	-	-	-	-	-
기 타		-	-	-	-	-	-